2019년 달라지는
제도와 시책

양주시

양주시 2019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

1. 일반행정분야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거 (시행일) / 관계부서
지방세 중가산금 비율 변경	• 중가산금 -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	• 중가산금의 비율 -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**“1만분의 75”**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	지방세징수법 제31조제1항 (‘19.1.1.) 징수과 체납관리팀 (8082-5541)
독촉기한 변경	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납부기한 - 발급일부터 10일	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납부기한 - 발급일부터 **20일**	지방세징수법 제32조제3항 (‘19.1.1.) 징수과 체납관리팀 (8082-5541)
신용카드납부제한 폐지	• 지방세체납자 신용카드 납부제한 -지방세 3건 이상, 체납액 1백만원 이상	• **삭제**	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(‘19.1.1.) 징수과 체납관리팀 (8082-5541)
납세증명서 제출예외 규정 추가	신 규	•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	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제2항 (‘19.1.1.) 징수과 체납관리팀 (8082-5541
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	• 종이고지서 병행 발송	• 스마트고지서 신청자에 한하여 종이고지서 없이 스마트고지서만 발송 • 모바일 송달에 따른 전자고지 세액공제 적용 가능	지방세기본법 제2조 (‘19. 1. 1.) 세정과 세정팀 (8082-5502)
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	신규	•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(홑벌이 5천만원)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(혼인신고 5년 이내 또는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예정)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% 감면 * 취득가액 3억원(수도권4억원)이하,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에 한함 (일몰기한 : ‘19.12.31)	지방세특례 제한법 제36조의2 (‘19. 1. 1.) 세정과 도세팀 (8082-5513)

2. 산업·경제분야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거 (시행일) / 관계부서
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	• 지원대상 -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(원칙) • 예외지원 - 신설 - 신설 - 자활기업, 장애인 직업재활시설, 사회적 기업 사업주(30인 이상 300인 미만) - 만 60세 이상 근로자 - 일용근로자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원 • 지원금액 - 1인당 월 13만원	• 지원대상 - 월 평균보수 **210만원 이하**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(원칙) • 예외지원 - 공동주택(아파트·연립주택·다세대 주택) 경비원·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- 노인장기요양기관,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도 규모 관계없이 지원 - 자활기업, 장애인 직업재활시설, 사회적 기업 사업주도 **규모 관계없이** 지원 - **55세 이상** 근로자 - 일용근로자 **월 10일 이상** 근무 시 지원 • 지원금액 - 1인당 월 13만원 지원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2만원 추가 지원	일자리안정자금 사업운영규정 (‘19. 1. 1.) 일자리정책과 일자리기획팀 (8082-6052)
최저임금 상승	• 시간당 7,530원	• 시간당 **8,350원**	최저임금위원회 고시 (‘19. 1. 1.) 일자리정책과 일자리기획팀 (8082-6053)
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신설 운영	신규	• 시 기 : 2019. 2월 개소 예정 • 장 소 : 경기도 북부청사(별관) • 운영분야 : 노무법률상담, 산재보상지원, 노동권교육, 정책연구제안 • 운영방법 : 道 직접운영	경기도 근로기본조례 제12조 (‘19. 2월) 일자리정책과 일자리기획팀 (8082-6054)
양주사랑상품권 발행	신규	• 양주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(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) - 발행형태 : 카드형 - 발행규모 : 50억원 - **구매할인 : 6%** (소득공제 30%) - 사 용 처 : 관내 중소상점 * 대형마트, 기업형슈퍼마켓 등 일부 점포 제외	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(‘19. 3월) 기업경제과 경제기획팀 (8082-6031)
전기저장장치 (ESS) 사용 전 검사항목	추가	• 전기저장장치(ESS) 사용 전 검사항목 추가 -[대상]리튬·나트륨·흐르는 전해질을 이용한 배터리는 20kWh 이상, 납산·니켈카드뮴을 이용한 배터리는 70kWh 이상에 적용 -[공통사항] : 7개 항목 -[20kWh 이상 리튬배터리 ESS 건물 내 설치] : 2개 항목 -[20kWh 이상 리튬배터리 ESS 건물 외 설치] : 2개 항목	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(‘19. 1. 1.) 기업경제과 신재생에너지팀 (8082-6062)

3. 문화·관광분야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거 (시행일) / 관계부서
통합문화이용권 (문화누리카드) 지원 확대	•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: 1인당 연간 7만원 • 사용처 : 문화예술, 여행, 체육	• 지원대상 동일 : 1인당 연간 **8만원** • 사용처 확대 : 케이블TV(티브로드, CJ헬로비전 등)	문화체육관광부 지침 (‘19. 1. 1.)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(8082-5654)

4. 농정·축산·산림분야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거 (시행일) / 관계부서
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(PLS) 전면시행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	• 작물별 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농약 - 국제기준(CODEX) 적용 - 유사농산물 최저기준 적용 - 해당농약의 최저기준 적용	• 작물별 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농약 - 불검출수준(0.01mg/kg이하) 적용	식품위생법 제7조 (‘19. 1. 1.) 기술지원과 식량작물팀 (8082-7252)

5. 보건·복지·여성분야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거 (시행일) / 관계부서
독립유공자 위문금	신규	• 독립유공자 위문금 신설 - 지급대상 : 독립유공자 및 유족 - 지급시기 : 3.1절, 8.15광복절 - 지급금액 : 20만원	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(‘19. 1. 1.)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(8082-5702)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거 (시행일) 관계부서
참전명예수당	• 참전명예수당 年 12만원 지급	• 6.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인상 - 年 12만원 → 年 15만원(3만원↑)	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('19. 1. 1.)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(8082-5702)
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 등 지원	신규	• 도내 의사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 대한 특별위로금 및 수당, 명절위로금 지원 - 특별위로금 : 생애 1회(의사자 30백만원, 의상자 1백만원~15백만원) - 수당 : 등급별 4만원~10만원 - 명절위문금 : 회당 10만원 - 지원시기 : 매월 25일	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('18. 10월)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(8082-5702)
애국지사 「경기광복 유공연금」 지원	신규	• 도내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 예우금 지원 - 지 원 액 : 1인당 매월 100만원씩 - 지원시기 : 매월 25일	경기도복지정책과 -22858 ('18. 12월)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(8082-5702)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(청년배당)	신규	•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만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원 지급(분기별25만원)	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('19. 11. 13.)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(8082-5703)
기초연금	• 기준연금액 - 소득하위 70%이하 어르신 월25만원	• 기준연금액 - 소득하위 20%이하 어르신 월30만원 - 소득하위 20%초과 70%이하 어르신 월25만원	기초연금법 제5조 ('19. 4월 예정) 사회복지과 노인지원팀 (8082-5713)
노인일자리 신규유형 신설	• 공익활동, 시장형,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	•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신설 - 월 60~66시간 - 월 54~59.4만원 지원 - 아동·청소년·장애인·노인시설 지원	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운영 안내 ('19. 1. 1.) 사회복지과 노인지원팀 (8082-5712)

<table>
<tr><th>제 목</th><th>종 전</th><th>달라지는 내용</th><th>근거
(시행일)
관계부서</th></tr>
<tr><td>긴급복지지원사업</td><td>•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5항 위기사유
「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」
• 일반재산 기준 : 8,500만원</td><td>• 긴급복지지원법 제 2조 5항 위기사유 추가
「화재 또는 <u>자연재해</u>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」
• 일반재산 기준 : <u>11,800만원</u></td><td>긴급복지지원법
(‘19. 1. 1.)

사회복지과
복지자원개발팀
(8082-5792)</td></tr>
<tr><td>부양의무자 기준 완화</td><td>• 부양의무자 미적용 대상
①수급자 가구 : 만 65세 이상 도래자, 등록 장애인 1~3급을 포함한 가구
②부양의무자가구 : 기초연금 수급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
☞ 위 두 조건(①,②)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</td><td>• 부양의무자 미적용 대상 확대
①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(생계·의료급여)
②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(생계급여)
③수급(신청)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 (생계·의료급여)
☞ 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 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</td><td>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6
(‘19. 1. 1.)

복지지원과
기초생활팀
(8082-5762)</td></tr>
<tr><td>맞춤형 급여</td><td>• 기준중위소득
- 1인가구 : 1,672,105원
- 2인가구 : 2,847,097원
- 3인가구 : 3,683,150원
- 4인가구 : 4,519,202원

• 생계급여 선정기준(중위소득의 30%)
- 1인가구 : 504,632원
- 2인가구 : 854,129원
- 3인가구 : 1,104,945원
- 4인가구 : 1,355,761원

• 의료급여 선정기준(중위소득의 40%)
- 1인가구 : 668,842원
- 2인가구 : 1,138,839원
- 3인가구 : 1,473,260원
- 4인가구 : 1,807,681원</td><td>• 기준중위소득
- 1인가구 : 1,707,008원
- 2인가구 : 2,906,528원
- 3인가구 : 3,760,032원
- 4인가구 : 4,613,536원

• 생계급여 선정기준(중위소득의 30%)
- 1인가구 : 512,102원
- 2인가구 : 871,958원
- 3인가구 : 1,128,010원
- 4인가구 : 1,384,061원

• 의료급여 선정기준(중위소득의 40%)
- 1인가구 : 682,803원
- 2인가구 : 1,162,611원
- 3인가구 : 1,504,013원
- 4인가구 : 1,845,414원
☞ 전년대비 2.08% 인상</td><td>보건복지부고시 제2018-144호
(‘18. 7. 24.)

복지지원과
기초생활팀
(8082-5762)</td></tr>
<tr><td>자활참여자 급여</td><td>• 자활참여자 인건비(원/인·일)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시장진입형</th><th>사회 서비스형</th><th>근로유지형</th></tr>
<tr><td>지급액계</td><td><u>42,210</u></td><td><u>38,190</u></td><td><u>27,110</u></td></tr>
<tr><td>급여단가</td><td><u>38,910</u></td><td><u>34,890</u></td><td><u>23,810</u></td></tr>
<tr><td>실 비</td><td><u>3,300</u></td><td><u>3,300</u></td><td><u>3,300</u></td></tr>
<tr><td>표준소득액(월)</td><td><u>1,011,660</u></td><td><u>907,140</u></td><td><u>619,060</u></td></tr>
<tr><td>비 고</td><td colspan="2">1일 8시간, 주 5일</td><td>1일 5시간 주 5일</td></tr>
</table></td><td>• 자활참여자 인건비(원/인·일)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시장진입형</th><th>사회 서비스형</th><th>근로유지형</th></tr>
<tr><td>지급액계</td><td><u>53,440</u></td><td><u>46,790</u></td><td><u>27,970</u></td></tr>
<tr><td>급여단가</td><td><u>49,440</u></td><td><u>42,790</u></td><td><u>23,970</u></td></tr>
<tr><td>실 비</td><td><u>4,000</u></td><td><u>4,000</u></td><td><u>4,000</u></td></tr>
<tr><td>표준소득액(월)</td><td><u>1,285,440</u></td><td><u>1,112,540</u></td><td><u>623,220</u></td></tr>
<tr><td>비 고</td><td colspan="2">1일 8시간, 주 5일</td><td>1일 5시간 주 5일</td></tr>
</table></td><td>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 -32688
(‘19. 1. 1.)

복지지원과
기초생활팀
(8082-5764)</td></tr>
</table>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거 (시행일) 관계부서
장애인 등록사항 변경 (장애인등급제 폐지 → 장애정도로 변경)	• 장애인등급제 - 의학적 심사 후 장애등급(1~6급) 결정 - 등급에 따른 서비스 지원	• '장애등급' 용어가 '장애정도'로 변경 - 장애 정도에 따라 '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현행 1급~3급)' 및 '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(현행 4급~6급)'으로 구분 - 등급에 따른 지원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후 지원 * 기존 대상자는 별도 장애정도 판정, 조사 불필요	장애인복지법 제32조 ('19. 7. 1.) 복지지원과 장애인정책팀 (8082-5731)
저소득 ·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	• 저소득 한부모가족 - 만 14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3만원 • 청소년 한부모가족 - 만 14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8만원	• 저소득 한부모가족 - **만 18세 미만** 아동 1인당 **월 20만원** • 청소년 한부모가족 - **만 18세 미만** 아동 1인당 **월 35만원**	여성가족부 고시 ('19. 1월 예정) 여성보육과 여성가족친화팀 (8082-5804)
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인상	•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: 시간당 7,800원 •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 연 600시간	•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: **시간당 9,650원** •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 **연 720시간**	2019년 아이돌봄지원 사업 안내 지침 ('19. 1. 1.) 여성보육과 여성가족친화팀 (8082-5804)
출산장려금 확대	• 신생아 출생일 기준 양주시 주민등록 1개월 이전부터 거주 -둘째아/1회/200천원 -셋째아/1회/900천원	• 신생아 출생일 기준 양주시 주민등록 1개월 이전부터 거주 -둘째아/1회/**500천원** -셋째아/1회/**1,000천원**	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('19. 1. 1.)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 (8082-5832)
아동수당 지원	• 지원내용 - 대상 : 만 0~5세 아동 - 조건 : 소득수준 하위 90%이하 - 금액 :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	• 지원 내용 - 대상 : 만 0~5세 아동 - 조건 : 소득수준 무관 - 금액 :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* 기존 소득인정액 초과 제외자는 시행일에 1월분부터 소급 지급	아동수당법 ('19. 4월 예정) 여성보육과 아동복지팀 (8082-5811)
출생신고 시 규격봉투 무료 지급	신규	•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자녀를 출산하고 출생아의 주민등록지를 우리시로 출생신고 시 출생아 1인당 1회 1,000리터(20리터, 50매) 일반용 규격봉투를 무료로 지급	양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25조 ('19. 1. 1.)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(8082-6903)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거 (시행일) 관계부서
건강진단결과서 (보건증) 온라인 발급 개선	• 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 온라인 발급 시 최초 발급만 가능 • 공공보건포털(http://www.g-health.kr) 사이트에서만 가능	• 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 온라인 발급 시 최초 발급 및 재발급 가능 (온라인 재발급 수수료 없음) • 공공보건포털(http://www.g-health.kr) 또는 민원24(http://minwon.go.kr)에서 발급가능	식품위생법 제40조 ('18. 12. 13.) 보건행정과 진료지원팀 (8082-7117)
건강진단결과서 (구보건증) 발급 개선	• 건강진단결과서(구보건증) 발급 시 타 보건소에서 검사한 결과지 발급 불가	• 건강진단결과서(구보건증) 발급 시 개인동의 전제로 타 보건소에서 검사한 결과지 발급 가능	전자정부법 제9조제6항 ('18. 12. 19.) 보건행정과 진료지원팀 (8082-7117)
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	신규	• 지원대상 : 2019년 관내 초등학교 4학년생 • 수행기관 : 관내 치과 병·의원 • 지원내용 : 구강검진, 구강보건교육, 예방 진료 등	경기도초등학생 치과주치의의료 지원 조례 ('19. 1. 1.) 보건사업과 구강보건팀 (8082-7161)
산후조리비 지원사업	신규	• 지원대상 : '19년 신생아로 1년 이상 도내 지속 거주한 출산 가정(소득무관) • 지원내용 -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원 - 지역화폐(5월경) 시작 시 소급적용	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('19. 1. 1.)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 (8082-7171)
인플루엔자 무료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	• 지원대상(연1회 무료 접종) - 생후 6개월~만12세 이하 아동 - 만65세 이상 어르신	• 지원대상(연1회 무료 접종) - 기존 대상 변동 없음 - **임신부 추가**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('19. 1. 1.)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 (8082-7171)

6. 환경분야

<table>
<tr><th>제 목</th><th>종 전</th><th>달라지는 내용</th><th>근거
(시행일)
관계부서</th></tr>
<tr><td>전기자동차
충전구역 주차금지</td><td>신규</td><td>• 주차단속 시행
- 1회 10만원 과태료</td><td>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(‘19. 1. 1.)
환경관리과 (8082-6341)</td></tr>
<tr><td>불연성마대
판매가격 인상</td><td>• 불연성마대 50ℓ : 1,500원</td><td>• 불연성마대 20ℓ : 2,000원
• 불연성마대 50ℓ : 5,000원</td><td>양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8조 (‘19. 1. 1.)
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(8082-6903)</td></tr>
<tr><td>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1회용품 (비닐봉투)사용규제</td><td>•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및 165m^{2}이상 슈퍼마켓
- 1회용품(비닐봉투) : 무상제공금지
(예외)종이재질 봉투 및 냉장품의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
•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업
- 1회용품(비닐봉투) : 규제대상제외</td><td>•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및 165m^{2}이상 슈퍼마켓
- 1회용품(비닐봉투) : 사용금지(유상 제공불가) (예외) 종전과 동일
•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업
- 1회용품(비닐봉투) : 무상제공금지
(예외)종이재질의 봉투 및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</td><td>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0조제3항 (‘19. 1. 1.)
청소행정과 재활용팀 (8082-6923)</td></tr>
<tr><td>농업부산물 파쇄 비료화 시범사업</td><td>신규</td><td>• 농업부산물 파쇄비료화 사업
- 2019년 상반기 농가에 직접 방문하여 농업부산물 파쇄 시범운영(파쇄기 1대, 기동반 1팀)
- 실효성이 인증될 경우 2019년도 하반기 용역을 통하여 전지역 운영</td><td>양주시 자체 시범사업 (‘19. 3. 1.)
청소행정과 가로환경팀 (8082-6941)</td></tr>
<tr><td>상수도 사용 요율구간 및 사용료 개편</td><td>
<table>
<tr><th>업종별</th><th>사용구분(㎥)</th><th>㎥당 단가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가정용</td><td>0~20</td><td>580</td></tr>
<tr><td>21~30</td><td>1,020</td></tr>
<tr><td>31~</td><td>1,310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일반용</td><td>0~100</td><td>1,080</td></tr>
<tr><td>101~1,000</td><td>1,440</td></tr>
<tr><td>1,001~</td><td>1,740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욕탕용</td><td>0~1,000</td><td>920</td></tr>
<tr><td>1,001~2,000</td><td>1,140</td></tr>
<tr><td>2,001~</td><td>1,380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산업용</td><td>0~1,000</td><td>1,230</td></tr>
<tr><td>1,001~</td><td>1,430</td></tr>
<tr><td>전용공업용</td><td>톤당</td><td>620</td></tr>
</table>
</td><td>
<table>
<tr><th>업종별</th><th>사용구분(㎥)</th><th>㎥당 단가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가정용</td><td>1~10</td><td>484</td></tr>
<tr><td>11~20</td><td>788</td></tr>
<tr><td>21~</td><td>1,092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일반용</td><td>1~75</td><td>1,009</td></tr>
<tr><td>76~150</td><td>1,334</td></tr>
<tr><td>151~</td><td>1,649</td></tr>
<tr><td>욕탕용</td><td>1~</td><td>1,176</td></tr>
<tr><td>전용공업용</td><td>1~</td><td>651</td></tr>
</table>
*구경별 정액요금 폐지
</td><td>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제25조 (‘19. 1월 사용량부터)
수도과 수도행정팀 (8082-6812)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제 목</th><th>종 전</th><th>달라지는 내용</th><th>근거
(시행일)
관계부서</th></tr>
<tr><td>하수도 사용
요율구간 및
사용료 개편</td><td>
<table>
<tr><th>업종별</th><th>사용구분(㎥)</th><th>㎥당 단가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가정용</td><td>0-20</td><td>310</td></tr>
<tr><td>21~30</td><td>400</td></tr>
<tr><td>31~</td><td>570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일반용</td><td>0-100</td><td>440</td></tr>
<tr><td>101~ 1,000</td><td>610</td></tr>
<tr><td>1,001~</td><td>860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욕탕용</td><td>0-1,000</td><td>430</td></tr>
<tr><td>1,001~2,000</td><td>540</td></tr>
<tr><td>2,001~</td><td>680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산업용</td><td>0-1,000</td><td>490</td></tr>
<tr><td>1,001~</td><td>560</td></tr>
</table>
</td><td>
<table>
<tr><th>업종별</th><th>사용구분(㎥)</th><th>㎥당 단가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가정용</td><td>1 ~ 10</td><td>360</td></tr>
<tr><td>11 ~ 20</td><td>460</td></tr>
<tr><td>21~</td><td>660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일반용</td><td>1 ~ 50</td><td>480</td></tr>
<tr><td>51 ~ 100</td><td>680</td></tr>
<tr><td>101~</td><td>950</td></tr>
<tr><td>욕탕용</td><td>1 ~</td><td>690</td></tr>
<tr><td>산업용</td><td>1 ~</td><td>820</td></tr>
</table>
</td><td>양주시
하수도사용
조례 제11조
(‘19. 1월
사용량부터)

하수과
하수행정팀
(8082-6854)</td></tr>
<tr><td>상·하수도사용료
감면대상자 확대</td><td>• 월 가정용10㎥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
- 기초생활수급자
- 장애인 1~3급</td><td>• 월 가정용10㎥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
- 기초생활수급자
- 장애인 1~3급
- 미성년자 세자녀 이상의 가구</td><td>양주시수도급수
조례 제36조
양주시하수도
사용조례 제22조
(‘19. 1월
신청분부터)

수도과
수도행정팀
(8082-6812)
하수과
하수행정팀
(8082-6854)</td></tr>
</table>

7. 도시·교통·건설분야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거 (시행일) 관계부서
경차 취득세 감면	• 취득세 100% 감면	• 취득세 50만원까지만 감면	지방세특례 제한법 제67조 (‘19. 1. 1.) 차량관리과 차량세무팀 (8082-6646)
3자녀이상 양육가구 차량취득세 감면	• 7~10인승 승용자동차 - 취득세 100% 감면	• 취득세 200만원 초과인 경우 - 85/100 감면율 적용	지방세특례 제한법 제22조의 2 (‘19. 1. 1.) 차량관리과 차량세무팀 (8082-6646)

8. 재난·안전·소방분야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거 (시행일) / 관계부서
편성의무자 연령 현행화	• 1978. 1. 1. ~ 1998. 12. 31. 출생한 대한민국 남성	• 1979. 1. 1. ~ 1999. 12. 31. 출생한 대한민국 남성	민방위기본법 제18조~20조 ('19. 1. 10.) 안전건설과 민방위팀 (8082-6772)
제도개선 사항 반영	• 외관상 심신장애인의 민방위대 제외 신청 시 이·통장의 확인서 제출	• 이·통장의 확인서 제출 내용 삭제	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9조 ('19. 1. 10.) 안전건설과 민방위팀 (8082-6772)
법정 제외자 처리 절차 명시	신규	• 법정 제외자의 편성제외 처리 절차 - 직권 편성제외 처리 - 증빙서류 징구 및 보관 명시	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('19. 1. 10.) 안전건설과 민방위팀 (8082-6772)
통·리대 분대 목록 명시	신규	• 단위대 분대 목록 - 지휘분대, 경보분대, 상황전파분대, 대피통제분대, 소화분대, 구호분대, 인명구조분대, 화생방분대 등	민방위기본법 제18조~제20조 ('19. 1. 10.) 안전건설과 민방위팀 (8082-6772)
기술지원대 분대 인원 조정	• 1개 분대 20명 이상	• 1개 분대 20명 이상(인구 7만 이하 지역은 10명 이상)	민방위기본법 제20조 ('19. 1. 10.) 안전건설과 민방위팀 (8082-6772)